지식경제부 보도자료	http://www.mke.go.kr
2011년 6월 9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문의 : 안전품질정책과 김남정 과장(02-509-7238), 배진한 연구사(02-509-7238)	

"제품리콜"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

- "제품안전기본법"에 따른 사업자용 리콜매뉴얼 제작·배포 -

□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"**제품리콜 사업자용 매뉴얼**"을 **제작·배포**한다고 한다.

○ 제품 결함으로 인해 **소비자 안전**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거나 제품 사고가 추가적인 사고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, **문제가 있는 제품을 리콜하는 것은 꼭 필요한 조치**이다.

○ 현재, 기술표준원은 금년 2월 시행된 "제품안전기본법*"에 따라 사업자의 **자발적 리콜****과 기술표준원의 **권고에 따른 리콜*******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.

* "제품안전기본법" 주요내용

▸사업자가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위해사실을 인지할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자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,
▸결함의 정도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리콜을 권고 또는 명령하고 그 사실을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

** 자발적리콜 : 자전거, 헤어드라이기 등 7개 업체 7개 제품 약 47만개

*** 리콜권고 : 완구, 어린이용 장신구 등 91개 업체 114개 제품

○ 그러나, 법 시행 4개월이 지났지만 **중소 제조업자나 영세한 수입업자의 경우** 아직까지 **동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.**

□ 이에 기술표준원은 **사업자들이 의문을 제기한 사항**과 **꼭 알아야 할 내용**을 **알기 쉽게 풀어 쓴 매뉴얼**을 통해 새로운 제품리콜 제도의 **원활한 정착을 지원**하기로 한 것이다.

□ 동 매뉴얼은 국내 **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함께하는 어린이용품 및 각종 생활용품 등을 중심으로,**

○ 리콜대상이 되는 **제품결함이란 무엇인지**, 사고발생시 **누가 보고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**에 대한 **해설과 보고양식** 등을 담고 있다.

○ 특히, 사업자가 제조·수입한 제품의 결함을 인지하였을 경우 **기술표준원**에 **즉시 보고**하고, **리콜계획서 제출 시** 기술표준원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**추가 조사없이 조속히 자발적 리콜을 이행하도록 지원**하는 "**신속리콜조치제도**"를 안내하고 있다.

○ 그밖에도, 사업자가 리콜을 **권고 또는 명령** 받았을 때의 **이행절차, 공표방법** 등을 구체화하였다.

□ 한편, 기술표준원은 "제품리콜 사용자용 매뉴얼은 **소비자를 위해 제품으로부터 보호**하고 **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유도하여 기업이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문화 정착**에 크게 기여할 것"이라고 밝혔다.

□ 동 매뉴얼은 책자로 전국 사업자에게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며, 제품안전정보포털(www.safetykorea.kr)에서 직접 다운받을 수도 있다.

○ 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동 매뉴얼을 **주기적으로 보완**함은 물론, 관련 **협회와 상공회의소 등을 통한 홍보도 강화**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.

<첨부 1> "제품리콜" 사업자용 매뉴얼